



시보는 광양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4호 2023. 1. 25.(수)

**고시**

- 광양시 고시 제2023-28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 1
- 광양시 고시 제2023-29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3

**공고**

- 광양시 공고 제2023-196호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광양시 공고 제2023-196호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장안길 22	2023. 1. 25.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전남 광양시 옥룡면 상평길 29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25.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옥곡면 장안길 22	2022. 10. 31. (2023. 1. 17.)	2023. 1. 25.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 멸실)
2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옥룡면 상평길 29	2022. 11. 4. (2023. 1. 17.)	2023. 1. 25.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 멸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25.

### 광 양 시 장

####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408-21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373,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1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24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408-21	20230125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2						
3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광 양 시 장

### 1. 개정이유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기준 중 중복,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절약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관계법령

- 수도법 제6조제2항, 제15조, 제38조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3. 주요내용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중 중복 내용 삭제(안 제10조 각호)
- 상수원 가뭄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40조)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원 조항 신설(안 제41조의3)

### 4. 개정 조례안 : 별첨

### 5. 입법예고기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 6. 의견제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상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백운로 1233, 상수도과(마동) (우 57786)

○ 전 화 : 061-797-2522, 3582

○ 팩 스 : 061-797-4152

○ 전자우편 : ryusc@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가뭄 예·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이거나 주암댐, 섬진강댐 등 수어댐의 상수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가뭄 대응단계 「심각」 단계에 해당될 경우 물 절약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지원)

- ①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급수설비의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조손가정, 장애인
  2. 절수설비(기기) 설치의무대상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9. ~ 12. (생략)</p> <p>&lt;신설&gt;</p>	<p><u>원공사의 댐 가뭄 대응단계가 「심각」 단계에 해당할 경우 물 절약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 <p><u>제41조의3(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지원)</u></p> <p><u>①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급수설비의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조손가정, 장애인</li> <li>2. 절수설비(기기) 설치의무대상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li> </ol>

광양시 공고 제2023 - 196호

##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광 양 시 장

### 1. 개정이유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중 시공기술자 자격 규정 정비·보완하기 위함

### 2. 관계법령

- 수도법 제6조제2항, 제15조, 제38조제4항
-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 3. 주요내용

-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 자격 규정 정비(안 제4조제2항)

### 4. 개정 규칙안 : 별첨

### 5. 입법예고기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 6. 의견제출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상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백운로 1233, 상수도과(마동) (우 57786)

○ 전 화 : 061-797-2522, 3582

○ 팩 스 : 061-797-4152

○ 전자우편 : ryusc@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위생 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 및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이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정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토목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 이어야 한다. 또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이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위생 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 및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이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